

의안번호	제 729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360회)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7년 10월 31일

#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9
----------	-----

제출연월일: 2017. 10. 3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이유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여 학부모부담을 경감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조기에 실현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립·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을 면제함(안 제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2018년 본예산 반영

다. 합 의: 합의 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9.29.~2017.10.19.):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립·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을 면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 감액) ① ~ ④ (생   략) <u>&lt;신   설&gt;</u>	제4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 감액)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u> <u>학교를 제외한 공립·사립고등</u> <u>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u> <u>학금을 면제한다</u>

## 관계법령

###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징수금액) 공립 및 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1.4.>

1. 삭제 <2013.1.4.> 2. 초등학교

3. 중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4.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나.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 삭제 <2013.1.4.>

라.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개정 2011.5.6.>

5. 고등기술학교 6. 각종학교

제3조(징수방법) ① 수업료는 별표에 따라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와 다르게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입학교의 급지가 전출학교의 급지보다 상위 급지일 경우 전입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급지차액을 징수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④ 재입학이나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제4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휴학자에게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③ 학교의 수업을 전기(前期) 또는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④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 □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징수금액) ①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삭제 <2013.4.12.>

제4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1. 삭제 <2013.4.12.>

2.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7호의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

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

다.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 고등학교 학생

라.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학생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2. 체육 등 특기신장 또는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생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범위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5.2.>

□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학교별	급지별		수업료				입학금	적용지역	
			구분	공립		사립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특성화고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특성화고
고등학교	1급지	“가”	월액	107,900	107,900	107,900	107,900	16,000	청주시
			분기액	323,700	323,700	323,700	323,700		
			연액	1,294,800	1,294,800	1,294,800	1,294,800		
		“나”	월액	78,400	47,200	78,400	47,200	13,800	기타 시지역
			분기액	235,200	141,600	235,200	141,600		
			연액	940,800	566,400	940,800	566,400		
	2급지	“가”	월액	75,600	45,500	75,600	45,500	12,800	읍지역
			분기액	226,800	136,500	226,800	136,500		
			연액	907,200	546,000	907,200	546,000		
		“나”	월액	67,200	42,900	67,200	42,900	12,500	면지역
			분기액	201,600	128,700	201,600	128,700		
			연액	806,400	514,800	806,400	514,800		
	3급지	월액	53,500	36,000	53,500	36,000	11,600	벽지 지역	
		분기액	160,500	108,000	160,500	108,000			
		연액	642,000	432,000	642,000	432,000			
방송통신고등학교		반기액	42,600				4,200	도내 전지역	
		연액	85,200						

- ※ 1. 1급지 “가”는 청주시 지역을, 1급지 “나”는 청주시를 제외한 시지역을, 2급지 “가”는 읍지역을, 2급지 “나”는 면지역을, 3급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청주시·충주시·제천시 지역 중 읍지역은 2급지 “가”를, 면지역은 2급지 “나”를 각각 적용한다.
2. 고등학교는 분기별,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학기별 금액을 분할 징수한다.
3. 분기별 구분
- 제 1분기 :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 제 2분기 :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 제 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 제 4분기 :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4. 특성화고(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 중전의 ‘전문계고등학교’